

녹색성장 연구 10-16-8

()

▪

정 명 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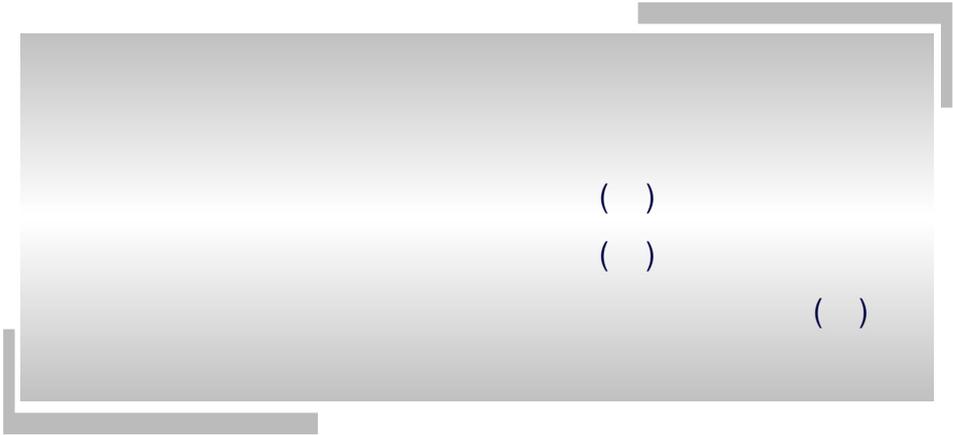
.

**A Study of Legislation for Maintenance of
Green Cities and Buildings**

**연구자 : 정명운(부연구위원)
Jung, Myeong-Un**

2010. 12. 23.





저탄소 사회만들기 추진 기본법(안)

전 문

제 1 장 총칙(제1조 - 제17조)

제 2 장 중장기적 목표(제18조)

제 3 장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제19조 · 제20조)

제 4 장 기본적 시책

제 1 절 국가 시책(제21조 - 제31조)

제 2 절 지방공공단체 시책(제32조)

제 5 장 저탄소사회만들기 특별행동기간

제 1 절 통칙(제33조)

제 2 절 저탄소사회만들기 특별행동기간에 관계된 시책(제34조 - 제53조)

제 6 장 저탄소사회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제54조)

부 칙

인간의 활동에 수반하여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의 대기중의 농도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최신의 과학적 지식에 의하면, 지구온난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자연환경, 사람의 생명과 건강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 존속의 기반을 흔드는 안전보장의 문제이자 그 방지는 인류공통의 과제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요경제국이 참가하는 형평적이고 실효적인 국제적 구조의 구축이 불가결하다. 일본은 전세계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적 구조에 근거하여 스스로 저탄소사회만들기를 확실하게 진행해나감과 더불어 세계 최고수준의 환경·에너지기술 등을 살려 세계에 공헌해나간다.

저탄소사회만들기는 지구온난화의 방지에 더해 새로운 산업 및 고용의 기회 창출, 에너지 분야에서의 안전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에 서서 국민 한사람한사람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 고래의 자연과 공생하는 문화와 고마운 정신으로 뒷받침된 생활양식 등을 살리고 환경·에너지기술을 살린 제품 등의 생산 및 보급,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산업구조, 사회시스템 및 생활양식의 변혁 등에 의해 지구환경의 보전과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의 양립을 도모하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 및 순환형 사회를 구축함과 동시에 세계최첨단의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한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며 관련한 시책을 장기적,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목 적)

제1조 이 법률은 지구온난화가 지구환경 및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 세계최첨단의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 저탄소사회만들기에 있어서는 지구환경의 보전과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함께 진행되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및 일본이 전세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공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비추어,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또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독립행정법인등, 국민 및 민간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목표의 설정,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의 책정과 기타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

을 장기적,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이로써 지구환경의 보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일본 및 세계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류 복지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① 이 법률에 있어 「지구온난화」라 함은 사람의 활동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온실효과가스가 대기중의 온실효과가스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 있어 「저탄소사회」라 함은 환경·에너지 기술을 살린 제품 등의 생산 및 보급,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산업구조, 사회시스템 및 생활양식의 변혁 등에 의해 대기중의 온실효과가스 농도가 일정수준으로 안정화함과 동시에 안정화하기까지 피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의한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작용 보전 및 강화와 함께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이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창조적이고 활력있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해지는 사회를 말하며, 「저탄소사회만들기」라 함은 저탄소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 있어 「온실효과가스」라 함은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2. 메탄
3. 일산이질소
4. 하이드로플루오르카본 중 시행령으로 정한 것
5. 퍼플오르카본 중 시행령으로 정한 것
6. 육불화유황

④ 이 법률에 있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이라 함은 사람의 활동

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온실효과가스를 대기중에 배출, 방출 혹은 누출시키거나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전기 혹은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이 한한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률에 있어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작용」이라 함은 식물의 광합성 등을 통해 온실효과가스를 대기중에서 제거하는 작용을 말한다.

⑥ 이 법률에 있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이라 함은 지구온난화가 생태계,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과 생활환경(사람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에 의한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자에 의한 적절한 역할분담 등의 하에서의 대처 등의 촉진)

제 3 조 저탄소사회만들기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 등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적정하고 공평한 부담 하에 또한 각각의 이해 및 대처를 촉진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 지식 및 예방원칙에 근거하는 저탄소사회만들기의 추진)

제 4 조 저탄소사회만들기는 최신의 과학적 지식 및 예방원칙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인 목표 및 저탄소사회의 존재방식을 규정한 다음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국민이익 증진에 대한 기여)

제 5 조 저탄소사회만들기는 그것을 위한 대처가 지구온난화의 방지 및 그 영향에 의한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에 더해 새로운 산업 및 고용기회의 창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의 활성화, 에너지 자급률의 향상, 국민의 건강의 유지와 기타 다양한 국민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지구환경의 보전과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의 양립을 도모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책의 유기적 제휴 및 다양한 조치의 적절한 조합에 의한 대책 추진)

제 6 조 저탄소사회만들기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관한 시책이 일체적,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시책상호의 유기적인 제휴를 도모함과 동시에 다양한 조치를 적절하게 조합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대책 추진)

제 7 조 저탄소사회만들기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적 구조 구축 및 국제협력의 추진)

제 8 조 저탄소사회만들기는 온실효과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모든 주요경제국(이하 「주요경제국」이라 한다)이 참가하는 형평적이고 실효적인 국제적 구조 구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대한 배려)

제 9 조 저탄소사회만들기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배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책무)

제10조 ① 국가는 전세계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경제국이 참가하는 형평적이고 실효적인 국제적 구조 구축을 위한 대처를 추진할 책무를 가진다.

② 국가는 제3삼조부터 전조까지에 규정하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한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이라 한다)에 준하여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③ 국가는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제13조 제1항의 독립행정법인등 국민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대처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정보의 제공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가진다.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11조 ①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준하여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해 지방공공단체 상호의 광역적인 제휴를 도모하면서, 국가의 시책에 준한 시책 및 기타 그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른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② 지방공공단체는 그 구역의 사업자, 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대처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정보의 제공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가진다.

(사업자의 책무)

제12조 ①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준하여 그 사업활동을 행하는데 있어서는 제품의 제조, 수입, 수출 혹은 판매 또는 역무 혹은 에너지의 제공 등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위한 조치(다른 자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강구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진다.

② 사업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조치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행할 책무를 가진다.

(독립행정법인 등의 책무)

제13조 ①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및 특수법인(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특

별한 설립행위로써 설립된 법인으로서, 총무성설치법(1999년 법률 제91호) 제4조 제15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이하 「독립행정법인 등」이라 한다)은 기본이념에 준하여 스스로의 사무 및 사업에 관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위한 조치(다른 자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강구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진다.

② 독립행정법인 등은 전항에 규정하는 조치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행할 책무를 가진다.

(국민 및 민간단체의 책무)

제14조 ① 국민은 기본이념에 준하여 그 일상생활에 있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제품, 역무 및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 등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위한 조치(다른 자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강구할 책무를 가진다.

② 국민 및 민간단체는 기본이념에 준하여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활동을 스스로 행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진다.

(상호 제휴 및 협력)

제15조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독립행정법인 등 국민 및 민간단체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해 상호에 그 담당하는 역할을 이해함과 동시에 적정하고 공평한 부담 하에 제휴를 도모하면서 협력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한다.

(Cool Earthday)

제16조 ① 사업자, 국민 등의 사이에 널리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활동을 행할 의욕을 높이기 위해 Cool Earthday를 설치한다.

② Cool Earthday는 7월 7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Cool Earthday의 취지에 걸맞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상의 조치 등)

제17조 정부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세제상 또는 금융상의 조치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장 중장기적 목표

제18조 ① 국가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에 관한 장기적인 목표로서 전세계의 1년간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5년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에서 그 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양 이상을 삭감한 양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주요경제국의 참가하에 일본의 1년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5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에서 그 백분의 80에 상당하는 양을 삭감한 양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있어서도 그 양을 상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제교섭에 의한 합의에 근거하여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및 흡수량에 관한 중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당해배출량에 관계된 목표 중 국내에서의 온실효과가스 배출 삭감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해 1년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에서 그 백분의 15에 상당하는 양을 삭감한 양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있어서도 그 양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기로 한다.

제 3 장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

제19조 ① 정부는 저탄소사회만들기를 일본의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기반의 하나로서 평가함과 동시에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의 장기적,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게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②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저탄소사회의 존재방식
2.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3. 전조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적인 연차의 목표
4. 전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에 관한 목표
5. 전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관한 사항
6. 전 각호에 기재하는 것 외에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장기적,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내각총리대신은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안에 대해 각의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의 결정이 있었을 때는 지체없이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을 국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인터넷의 이용과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공표해야 한다.

⑤ 정부는 대개 5년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에 검토를 추가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의 변경

에 대해 준용한다.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과 국가의 다른 시책과의 관계)

제20조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 이외의 국가시책은 저탄소사회 만들기에 관해서는 당해시책의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을 기본으로 하기로 한다.

제 4 장 기본적 시책

제 1 절 국가의 시책

(규제조치, 경제적 조치, 자주적인 대처 촉진에 관한 조치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조치의 적절한 조합에 의한 시책의 실시)

제21조 국가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규제조치, 경제적조치, 자주적인 대처 촉진에 관한 조치 및 정보제공에 관한 조치를 적절하게 조합함으로써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시책의 책정에 있어서의 배려)

제22조 국가는 온실효과가스 배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해 배려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의 솔선실행)

제23조 ① 국가는 스스로의 사무 및 사업에 관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솔선하여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제품, 역무 및 에너지의 이용, 녹화(綠化)의 추진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국가는 전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강구해도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에 대해 당해조치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있어서의 카본오프셋(스스로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이를 삭감하는 노력을 실시함과 동시에 삭감이 곤란한 부분의 배출량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른 자의 활동에 의해 삭감되거나 흡수된 온실효과가스량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등에 의해 당해삭감 또는 흡수량을 상쇄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동일)의 이용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이용가능한 기술의 보급 및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제24조 국가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이용가능한 기술의 최대한의 보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환경교육의 진흥 등)

제25조 국가는 사업자, 국민 등이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들의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활동을 행할 의욕이 증진되고 그 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이하 「환경교육」이라 한다)의 진흥, 홍보활동의 충실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통계의 정비 등)

제26조 국가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 및 흡수량 상황, 저탄소사회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진척 상황 등의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통계의 정비 및 충실, 집계 및 그 결과의 신속한 공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과학적 지식의 충실 등)

제27조 국가는 대기중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의 농도변화 상황 및 이에 관련한 기후 변동 및 생태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측 및 감시의 추진,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의한 피해 및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관한 조치의 실시가 경제사회, 국민생활 등에 미치는 효과 또는 영향에 관한 분석 등의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연구 추진, 시험연구체제의 정비, 연구자의 양성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각 분야 등에서의 시책 추진 및 제휴 강화)

제28조 국가는 에너지의 수급, 공장 또는 사업장, 건축물, 기계기구, 교통, 사회자본의 정비, 도시 및 지역만들기, 농림수산과 기타 각 분야 등에서의 시책에 대해 당해시책의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시책 상호의 유기적인 제휴 하에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온실효과가스 흡수작용의 보전 및 강화)

제29조 국가는 온실효과가스 흡수작용의 보전 및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삼림의 정비 및 보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농지관리, 해양에서의 대책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대책 추진)

제30조 국가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생물의 다양성 보전,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의 유지, 생활환경의 보전, 농림어업의 생산력 유지, 사회자본의 정비, 재해에 의한 피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사회의 대처에 대한 기여)

제31조 국가는 전세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적 구조구축 및 그 아래에서의 대처 실시, 국제협력의 추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제32조 지방공공단체는 전절에 규정하는 국가의 시책에 준한 시책 및 기타 그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른 저탄소사회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이러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장 저탄소사회만들기 특별행동기간

제 1 절 통 칙

제33조 정부는 조기에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지구온난화의 방지 및 그 영향에 의한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에 더해 새로운 산업 및 고용기회의 창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의 활성화 등의 국민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요하다는 것과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 등에 의한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선진적인 대처의 촉진 및 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비추어 이 법률의 시행후 1년간을 저탄소사회만들기를 위한 특별행동기간으로 하고 당해기간내에 다음 절에 규정하는 시책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절 저탄소사회만들기 특별행동기간에 관계된 시책

(재생가능에너지의 수급 확대)

제34조 정부는 2020년(평성32년)을 목표로 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 최종단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의 양의 백분의 20에 상당하는 양을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 풍력, 지열, 공기중의 열, 수력, 바이오매스와 기타 에너지원 중 영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전기, 열 또는 연료를 말한다. 이하 동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

여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 하에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의 촉진, 고가격매수제도(재생가능에너지 중 전기에 대해 일정기간 일정가격으로 전기사업자에게 매수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의 확충, 전력계통의 고도화 촉진 등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학교, 병원과 기타 건축물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추진, 주택, 사무소, 점포, 공장과 기타 건축물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촉진, 지역에 있어서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 등에 의한 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수요를 증진한다.

(원자력발전의 촉진)

제35조 정부는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시설 등에 대해 그 안전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스스로도 관여하면서 원자력발전시설의 설비이용률을 향상시키고 또한 원자력발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촉진함과 동시에 핵연료 사이클의 확립 및 고속증식로 사이클의 조기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석탄화력발전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억제)

제36조 정부는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면서, Clean Coal 기술(석탄이용에 동반하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과 기타 환경에 대한 부하를 억제하고 그 유효하고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추진, 세계최고수준의 발전효율 유지 또는 향상 등을 도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한층 억제하는데 노력하는 것을 촉진함과 동시에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이산화탄소의 회수 및 저류 등에 관계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공장 또는 사업장, 건축물, 전기기기 및 수송용 기기의 저탄소화)

제37조 정부는 공장 또는 사업장, 건축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전기기기 및 자동차 등의 수송용 기기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사용의 합리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제품, 역무 및 에너지의 이용촉진, 기기 등의 사용방법의 개선, 사업자 상호 제휴에 의한 대책 촉진, 기존 건축물의 개선, 질높은 건축물의 장기적인 이용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확충함과 동시에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건축물, 기기 등의 보급을 촉진한다.

(교통분야 대책 촉진)

제38조 정부는 단위수송량당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보다 적은 연료 등의 이용 촉진, 전기자동차 등에 관계된 에너지 공급설비 등의 정비 등에 의해 자동차 이용에 동반하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을 촉진함과 동시에 철도, 선박 등에 의한 물자의 유통 촉진, 공공교통기관 이용자의 편리 증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정비 등에 의해 Modal shift(자동차보다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보다 적은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말한다)를 촉진한다.

(그린IT의 이용 촉진)

제39조 정부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이용에 동반하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을 촉진함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의해 에너지의 사용, 사람의 왕래 및 물자의 유통과 물자의 생산 및 소비의 합리화 등을 촉진한다.

(저탄소형 도시 및 지역만들기 추진)

제40조 정부는 도시계획,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및 기타 토지이용에 관한 시책에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위치부여함과 동시

에 지역전체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과 지역활성화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중심시가지에 대한 불필요한 또는 급하지 않은 자동차의 승차진입 억제, 공공교통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약형 도시구조의 구축, 에너지의 공동이용, 폐열의 회수이용, 녹지의 보전 및 녹화의 추진 등에 의해 선진적인 도시 및 지역만들기를 추진한다.

(대체프레온 등 3가스에 관계된 대책 추진)

제41조 정부는 대체프레온 등 3가스(제2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기재하는 물질을 말한다)의 적정하고 확실한 회수 및 파괴, 생산 및 사용 억제에 기여하는 대체물질의 개발 및 사용가능한 대체물질을 사용한 제품 보급에 의해 그 배출량 삭감을 촉진한다.

(삼림 등에 의한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작용 보전 및 강화 추진과 바이오매스의 이용 등의 촉진)

제42조 정부는 간벌 등의 실시에 의한 삼림 등의 적정한 정비 및 보전을 추진하고 또한 국산목재 등을 이용한 주택 및 공공건축물 등의 보급과 간벌된 목재 및 하수오니 등의 미이용의 또는 이용정도가 낮은 바이오매스의 유효한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농림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에 동반하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촉진한다.

(세계의 그린화 추진)

제43조 정부는 저탄소화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국민경제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및 국민의 생활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도록 한층 더 세계전체의 그린화(환경에 대한 부하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재검토를 말한다)를 추진한다.

(국내배출량거래에 관계된 방침 결정)

제44조 정부는 국내에서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거래에 관계된 시행적 실시상황의 평가를 바탕으로 대응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당해방침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활동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등의 정보개시 촉진)

제45조 정부는 저탄소사회만들기를 배려한 사업활동이 경제사회의 폭넓은 주체로부터 평가되도록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과 기타 사업활동에 동반하여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에 관계된 정보개시를 촉진한다.

(제품 등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확립 등)

제46조 정부는 제품의 제조부터 수송, 이용 및 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내외에서의 행정 및 역무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과 다른 자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대한 기여정도의 산정 및 표시방법 등을 확립하고 그 방법의 국제적인 표준에 대한 반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제품, 역무 및 에너지의 구입 및 이용과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을 배려한 계약을 추진한다.

(카본오프셋의 추진)

제47조 정부는 카본오프셋에 관계되는 삭감 또는 흡수된 온실효과가스량의 산정, 인증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에 의해 카본오프셋의 이용을 촉진한다.

(사업자에 의한 대처의 촉진)

제48조 정부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의 창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자, 농림수산업자 등이 행하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와 기타 대처에 대한 투융자 등을 촉진한다.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제49조 정부는 태양광발전장치, 축전지, 전력계통, 연료전지, 철강의 제조, 자동차, 정보통신 등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 혁신적인 기술의 계획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한다.

(환경교육의 추진)

제50조 정부는 가정, 학교, 직장, 지역 및 기타 모든 장소에서 환경교육의 충실이 도모되도록 교재의 개발, 인재의 육성, 환경을 배려한 학교시설 및 학습환경의 정비 등을 촉진한다.

(국민운동의 추진)

제51조 정부는 지구온난화상황,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 동반하는 온실효과가스 배출상황, 그 배출량 삭감 등에 유효한 대처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사업자, 국민 등에 의한 협동대처 촉진 등에 의해 사업자, 국민 등의 사이에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국민 한사람한사람의 자주적인 행동에 의한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국민운동의 전개를 촉진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책의 추진)

제52조 정부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관한 관측 및 감시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감염증 등의 예방, 농작물의 품종개량, 홍수, 고조, 갈수, 간벌, 토사재해 등에 의한 피해 방지 등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저탄소사회만들기를 위한 국제공헌)

제53조 정부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국제적 구조 만들기를 주도함과 동시에 이러한 구조에 책임을 공유하여 참가하는 개발도상지역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도록 기술협력 및 자금공여, 사회자본정비, 인재육성 등에 관계된 협력을 추진한다.

제 6 장 저탄소사회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정비

제54조 ①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을 장기적,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별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추진본부의 명칭에 대해서는 동항의 법률에 있어 이와 다른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

부 칙

(시행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월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검 토)

제 2 조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충실정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의한 피해상황, 경제사회의 동향,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대해 검토를 더해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제 3 조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1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차 중 「흡수작용」을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작용」으로 바꾼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이 법률에 있어 「지구온난화」, 「온실효과가스」, 「온실효과가스의 배출」 및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작용」의 의미는 각각 저탄소사회만들기 추진기본법(2010년 법률 제▼▼▼호)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당해용어의 의미에 의한다.

제2조 제2항 중 「흡수작용」을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작용」으로 바꾸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6항을 동조 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흡수작용」을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작용」으로, 동조 제4항 중 「전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를 「전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로 바꾼다.

제4조 제2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중 「흡수작용」을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작용」으로 바꾼다.

제21조의3 제1항 중 「흡수작용」을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작용」으로 바꾸고, 동조 제3항 제1호 중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바꾼다.

제5장의 장명 중 「흡수작용」을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작용」으로 바꾼다.

제31조 제3항 제2호 중 「제2조 제6항 각호」를 「제2조 제4항 각호」로 바꾼다.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일부개정)

제 4 조 다음에 기재하는 법률의 규정 중 「제2조 제6항」을 「제2조 제4항」으로 바꾼다.

1. 농업협동조합법(1947년 법률 제132호) 제1조 제6항 제13호
2. 금융상품거래법(1948년 법률 제25호) 제817조의2 제1항 단서
3.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1949년 법률 제181호) 제9조의8 제2항

제17호

4. 신용금고법(1951년 법률 제238호) 제53조 제3항 제13호
5. 장기신용은행법(1952년 법률 제187호) 제6조 제2항 제3호
6. 노동금고법(1953년 법률 제227호) 제58조 제2항 제18호
7. 은행법(1981년 법률 제519호) 제1조 제2항 제14호
8. 보험업법(2005년 법률 제105호) 제98조 제1항 제8호
9. 농림중앙금고법(2001년 법률 제93호) 제54조 제4항 제16호
10. 주식회사상공조합중앙금고법(2007년 법률 제74호) 제21조 제4항 제18호
11. 상품거래소법 및 상품투자에 관계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9년 법률 제74호) 제2조 중 상품거래소법(1950년 법률 제239호) 제3조에 단서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특정제품에 관계된 프레온류의 회수 및 파괴 실시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제 5 조 특정제품에 관계된 프레온류의 회수 및 파괴 실시확보 등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6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17호)」를「저탄소사회만들기추진기본법(2010년 법률 제▼▼▼호)」로 바꾼다.

제2조 제1항 중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저탄소사회만들기추진기본법」으로 바꾼다.

(독립행정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법의 일부개정)

제 6 조 독립행정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법(2002년 법률 제14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 중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1998년 법률 제117호)를 「저탄소사회만들기추진기본법(2010년 법률 제▼▼▼호)」로 바꾼다.

이 유

지구온난화가 지구환경 및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세계최첨단의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이익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 저탄소사회만들기에 있어서는 지구환경의 보전과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함께 진행되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및 일본이 전세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공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비추어,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장기적,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해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또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독립행정법인 등 국민 및 민간단체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목표의 설정,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의 책정과 기타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저탄소 사회만들기 추진 기본법(안) 요강

전 문

인간의 활동에 수반하여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의 대기중의 농도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최신의 과학적 지식에 의하면, 지구온난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자연환경, 사람의 생명과 건강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 존속의 기반을 흔드는 안전보장의 문제이자 그 방지는 인류공통의 과제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요경제국이 참가하는 형평적이고 실효적인 국제적 구조의 구축이 불가결하다. 일본은 전세계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적 구조에 근거하여 스스로 저탄소사회만들기를 확실하게 진행해나감과 더불어 세계 최고수준의 환경·에너지기술 등을 살려 세계에 공헌해나간다.

저탄소사회만들기는 지구온난화의 방지에 더해 새로운 산업 및 고용기회 창출, 에너지 분야에서의 안전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에 서서 국민 한사람한사람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 고래의 자연과 공생하는 문화와 과분한?(もったいない)의 정신으로 뒷받침된 생활양식 등을 살리고 환경·에너지기술을 살린 제품 등의 생산 및 보급,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산업구조, 사회 시스템 및 생활양식의 변혁 등에 의해 지구환경의 보전과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의 양립을 도모하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 및 순환형 사회를 구축함과 동시에 세계최첨단의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한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그 방향성

을 제시하며 관련한 시책을 장기적,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법률은 지구온난화가 지구환경 및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 세계최첨단의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것, 저탄소사회만들기에 있어서는 지구환경의 보전과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함께 진행되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및 일본이 전세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공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비추어,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또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독립행정법인 등 국민 및 민간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목표의 설정,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의 책정과 기타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장기적,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이로써 지구환경의 보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일본 및 세계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류 복지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제1조 관계)

2. 정 의

① 이 법률에 있어 「지구온난화」라 함은 사람의 활동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온실효과가스가 대기중의 온실효과가스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

② 이 법률에 있어 「저탄소사회」라 함은 환경·에너지 기술을 살린 제품 등의 생산 및 보급,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산업구조,

사회시스템 및 생활양식의 변혁 등에 의해 대기중의 온실효과가스 농도가 일정수준으로 안정화함과 동시에 안정화하기까지 피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의한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작용 보전 및 강화와 함께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이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창조적이고 활력있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해지는 사회를 말하며, 「저탄소사회만들기」라 함은 저탄소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

③ 이 법률에 있어 「온실효과가스」라 함은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2. 메탄
3. 일산이질소
4. 하이드로플루오르카본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
5. 퍼플오르카본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
6. 육불화유황

④ 이 법률에 있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이라 함은 사람의 활동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온실효과가스를 대기중에 배출, 방출 혹은 누출시키거나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전기 혹은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이 한한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⑤ 이 법률에 있어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작용」이라 함은 식물의 광합성 등을 통해 온실효과가스를 대기중에서 제거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

⑥ 이 법률에 있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이라 함은 지구온난화가 생태계,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과 생활환경(사람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에 의한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 (제2조 관계)

3. 기본이념

① 저탄소사회만들기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 등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적정하고 공평한 부담 하에 또한 각각의 이해 및 대처를 촉진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것. (제3조 관계)

② 저탄소사회만들기는 최신의 과학적 지식 및 예방원칙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인 목표 및 저탄소사회의 존재방식을 규정한 다음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제4조 관계)

③ 저탄소사회만들기는 그것을 위한 대처가 지구온난화의 방지 및 그 영향에 의한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에 더해 새로운 산업 및 고용기회의 창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의 활성화, 에너지 자급률의 향상, 국민의 건강유지와 기타 다양한 국민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지구환경의 보전과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의 양립을 도모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제5조 관계)

④ 저탄소사회만들기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관한 시책이 일체적,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시책 상호의 유기적인 제휴를 도모함과 동시에 다양한 조치를 적절하게 조합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것. (제6조 관계)

⑤ 저탄소사회만들기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것. (제7조 관계)

⑥ 저탄소사회만들기는 온실효과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모든 주요경제국(이하 「주요경제국」이라 한다)이 참가하는 형평적이고 실효적인 국제적 구조 구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것. (제8조 관계)

⑦ 저탄소사회만들기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배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제9조 관계)

4.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세계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경제국이 참가하는 형평적이고 실효적인 국제적 구조 구축을 위한 대처를 추진할 책무를 가지는 것.

② 국가는 3.의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한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이라 한다)에 준하여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할 책무를 가지는 것.

③ 국가는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7.의 독립행정법인 등 국민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대처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정보의 제공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가지는 것. (제10조 관계)

5.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①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준하여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해 지방공공단체 상호의 광역적인 제휴를 도모하면서, 국가의 시책에 준한 시책 및 기타 그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른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할 책무를 가지는 것.

② 지방공공단체는 그 구역의 사업자, 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대처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정보의 제공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가지는 것. (제11조 관계)

6.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준하여 그 사업활동을 행하는데 있어서는 제품의 제조, 수입, 수출 혹은 판매 또는 역무 혹은 에너지의 제공 등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위한 조치(다른 자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강구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지는 것.

② 사업자는 1.에 규정하는 조치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행할 책무를 가지는 것. (제12조 관계)

7. 독립행정법인 등의 책무

①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및 특수법인(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설립행위로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총무성설치법 제4조 제15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이하 「독립행정법인 등」이라 한다)은 기본이념에 준하여 스스로의 사무 및 사업에 관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위한 조치(다른 자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강구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지는 것.

② 독립행정법인 등은 1.에 규정하는 조치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행할 책무를 가지는 것. (제13조 관계)

8. 국민 및 민간단체의 책무

① 국민은 기본이념에 준하여 그 일상생활에 있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제품, 역무 및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 등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위한 조치(다른 자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강구할 책무를 가지는 것.

② 국민 및 민간단체는 기본이념에 준하여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활동을 스스로 행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지는 것. (제14조 관계)

9. 상호 제휴 및 협력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독립행정법인 등 국민 및 민간단체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해 상호에 그 담당하는 역할을 이해함과 동시에 적정하고 공평한 부담 하에 제휴를 도모하면서 협력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하는 것. (제15조 관계)

10. Cool Earthday

① 사업자, 국민 등의 사이에 널리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활동을 행할 의욕을 높이기 위해 Cool Earthday를 설치하는 것.

② Cool Earthday는 7월 7일로 하는 것.

③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Cool Earthday의 취지에 걸맞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제16조 관계)

11.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세제상 또는 금융상의 조치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 (제17조 관계)

제 2 장 중장기적 목표

① 국가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에 관한 장기적인 목표로서 전세계의 1년간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을 2050년(평성62년)까지, 2005년(평성17년)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양 이상을 삭감한 양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주요경제국의 참가하에 일본의 1년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2050년(평성62년)까지 2005년(평성17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에서 그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양을 삭감한 양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있어서도 그 양을 상회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② 국가는 국제교섭에 의한 합의에 근거하여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및 흡수량에 관한 중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 이러한 경우에 있어, 당해배출량에 관계된 목표 중 국내에서의 온실효과가스 배출 삭감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해 1년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2020년(평성32년)까지 2005년(평성17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에서 그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양을 삭감한 양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있어서도 그 양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기로 하는 것. (제18조 관계)

제 3 장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

1.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

① 정부는 저탄소사회만들기를 일본의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기반의 하나로서 평가함과 동시에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의 장기적,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게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정해야 하는 것.

②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

1. 저탄소사회의 존재방식
 2.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3. 제2장의 1.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적인 연차의 목표
 4. 제2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에 관한 목표
 5. 4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관한 사항
 6. 1부터 5까지 기재하는 것 외에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장기적,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내각총리대신은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안에 대해 각의의 결

정을 구해야 하는 것.

④ 내각총리대신은 3에 의한 각의의 결정이 있었을 때는 지체없이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을 국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인터넷의 이용과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공표해야 하는 것.

⑤ 정부는 대개 5년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에 검토를 추가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것.

⑥ 3 및 4는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의 변경에 대해 준용하는 것. (제19조 관계)

2.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과 국가의 다른 시책과의 관계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 이외의 국가시책은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해서는 당해시책의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을 기본으로 하기로 하는 것. (제20조 관계)

제 4 장 기본적 시책

1. 국가의 시책

① 규제조치, 경제적 조치, 자주적인 대처 촉진에 관한 조치 및 정보제공에 관한 조치의 적절한 조합에 의한 시책의 실시하며 국가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규제조치, 경제적 조치, 자주적인 대처 촉진에 관한 조치 및 정보제공에 관한 조치를 적절하게 조합함으로써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 (제21조 관계)

② 국가시책의 책정에 있어서의 배려

국가는 온실효과가스 배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해 배려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 것. (제22조 관계)

③ 국가의 솔선실행

1. 국가는 스스로의 사무 및 사업에 관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솔선하여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제품, 역무 및 에너지의 이용, 녹화(綠化)의 추진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

2. 국가는 1에 규정하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강구해도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에 대해 당해조치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있어서의 카본오프셋(스스로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이를 삭감하는 노력을 실시함과 동시에 삭감이 곤란한 부분의 배출량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른 자의 활동에 의해 삭감되거나 흡수된 온실효과가스량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등으로 당해삭감 또는 흡수량을 상쇄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동일)의 이용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는 것. (제23조 관계)

④ 이용가능한 기술의 보급 및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국가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이용가능한 기술의 최대한의 보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 (제24조 관계)

⑤ 환경교육의 진흥 등

국가는 사업자, 국민 등이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들의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활동을 행할 의욕이 증진되고 그 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이하 「환경교육」이라 한다)의 진흥, 홍보활동의 충실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 (제25조 관계)

⑥ 통계의 정비 등

국가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 및 흡수량 상황, 저탄소사회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진척 상황 등의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통계의 정비 및 충실, 집계 및 그 결과의 신속한 공표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 (제26조 관계)

⑦ 과학적 지식의 충실 등

국가는 대기중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의 농도변화 상황 및 이에 관련한 기후 변동 및 생태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측 및 감시의 추진,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의한 피해 및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관한 조치의 실시가 경제사회, 국민생활 등에 미치는 효과 또는 영향에 관한 분석 등의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연구 추진, 시험연구체제의 정비, 연구자의 양성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 (제27조 관계)

⑧ 각 분야 등에서의 시책 추진 및 제휴 강화

국가는 에너지의 수급, 공장 또는 사업장, 건축물, 기계기구, 교통, 사회자본의 정비, 도시 및 지역만들기, 농림수산과 기타 각 분야 등에서의 시책에 대해 당해시책의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시책 상호의 유기적인 제휴 하에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 (제28조 관계)

⑨ 온실효과가스 흡수작용의 보전 및 강화

국가는 온실효과가스 흡수작용의 보전 및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삼림의 정비 및 보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농지관리, 해양에서의 대책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 (제29조 관계)

⑩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대책 추진

국가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생물의 다양성 보전,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의 유지, 생활환경의 보전, 농림어업의 생산력 유지, 사회자본의 정비, 재해에 의한 피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 (제30조 관계)

⑪ 국제사회의 대처에 대한 기여

국가는 전세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국

제적 구조구축 및 그 아래에서의 대처 실시, 국제협력의 추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 (제31조 관계)

2.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지방공공단체는 1.에 규정하는 국가의 시책에 준한 시책 및 기타 그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른 저탄소사회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이러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 (제32조 관계)

제 5 장 저탄소사회만들기 특별행동기간

1. 통 칙

정부는 조기에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지구온난화의 방지 및 그 영향에 의한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에 더해 새로운 산업 및 고용기회의 창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의 활성화 등의 국민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요하다는 것과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 등에 의한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선진적인 대처의 촉진 및 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비추어 이 법률의 시행후 1년간을 저탄소사회만들기를 위한 특별행동기간으로 하고 당해기간내에 다음 절에 규정하는 시책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33조 관계)

2. 저탄소사회만들기 특별행동기간에 관계된 시책

① 재생가능에너지의 수급 확대

정부는 2020년(평성32년)을 목표로 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 최종단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의 양의 백분의 20에 상당하는 양을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 풍력, 지열, 공기중의 열, 수력, 바이오매스와 기타 에너지원 중 영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전기, 열 또는 연료를

말한다. 이하 동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 하에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의 촉진, 고정가격매수제도(재생가능에너지 중 전기에 대해 일정기간 일정가격으로 전기사업자에게 매수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의 확충, 전력계통의 고도화 촉진 등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학교, 병원과 기타 건축물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추진, 주택, 사무소, 점포, 공장과 기타 건축물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촉진, 지역에 있어서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 등에 의한 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수요를 증진하는 것. (제34조 관계)

② 원자력발전의 촉진

정부는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시설 등에 대해 그 안전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스스로도 관여하면서 원자력발전시설의 설비이용률을 향상시키고 또한 원자력발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촉진함과 동시에 핵연료 사이클의 확립 및 고속증식로 사이클의 조기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것. (제35조 관계)

③ 석탄화력발전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억제

정부는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면서, Clean Coal 기술(석탄이용에 동반하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과 기타 환경에 대한 부하를 억제하고 그 유효하고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추진, 세계최고수준의 발전효율 유지 또는 향상 등을 도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한층 억제하는데 노력하는 것을 촉진함과 동시에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이산화탄소의 회수 및 저류 등에 관계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제36조 관계)

④ 공장 또는 사업장, 건축물, 전기기기 및 수송용 기기의 저탄소화

정부는 공장 또는 사업장, 건축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전기기기

및 자동차 등의 수송용 기기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사용의 합리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제품, 역무 및 에너지의 이용촉진, 기기 등의 사용방법의 개선, 사업자 상호 제휴에 의한 대책 촉진, 기존 건축물의 개선, 질높은 건축물의 장기적인 이용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확충함과 동시에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건축물, 기기 등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 (제37조 관계)

⑤ 교통분야 대책 촉진

정부는 단위수송량당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보다 적은 연료 등의 이용 촉진, 전기자동차 등에 관계된 에너지 공급설비 등의 정비 등에 의해 자동차 이용에 동반하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을 촉진함과 동시에 철도, 선박 등에 의한 물자의 유통 촉진, 공공교통기관 이용자의 편리 증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정비 등에 의해 Modal shift(자동차보다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보다 적은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말한다)를 촉진하는 것. (제38조 관계)

⑥ 그린IT의 이용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이용에 동반하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을 촉진함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의해 에너지의 사용, 사람의 왕래 및 물자의 유통과 물자의 생산 및 소비의 합리화 등을 촉진하는 것. (제39조 관계)

⑦ 저탄소형 도시 및 지역만들기 추진

정부는 도시계획,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및 기타 토지이용에 관한 시책에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위차부여함과 동시에 지역전체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과 지역활성화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중심시가지에 대한 불필요한 또는 급하지 않은 자동차의 승차 진입 억제, 공공교통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약형 도시구조의 구축, 에너지의 공동이용, 폐열의 회수이용, 녹지의 보전 및 녹화의 추진 등에

의해 선진적인 도시 및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것. (제40조 관계)

⑧ 대체프레온 등 3가스에 관계된 대책 추진

정부는 대체프레온 등 3가스(제2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기재하는 물질을 말한다)의 적정하고 확실한 회수 및 파괴, 생산 및 사용 억제에 기여하는 대체물질의 개발 및 사용가능한 대체물질을 사용한 제품 보급에 의해 그 배출량 삭감을 추진하는 것. (제41조 관계)

⑨ 삼림 등에 의한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작용 보전 및 강화 추진과 바이오매스의 이용 등의 촉진

정부는 간벌 등의 실시에 의한 삼림 등의 적정한 정비 및 보전을 추진하고 또한 국산목재 등을 이용한 주택 및 공공건축물 등의 보급과 간벌된 목재 및 하수오니 등의 미이용의 또는 이용정도가 낮은 바이오매스의 유효한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농림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에 동반하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을 추진하는 것. (제42조 관계)

⑩ 세계의 그린화 추진

정부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국민경제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및 국민의 생활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도록 한층 더 세계전체의 그린화(환경에 대한 부하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재검토를 말한다)를 추진하는 것. (제43조 관계)

⑪ 국내배출량거래에 관계된 방침 결정

정부는 국내에서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거래에 관계된 시행적 실시상황의 평가를 바탕으로 대응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당해방침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44조 관계)

⑫ 사업활동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등의 정보개시 촉진

정부는 저탄소사회만들기를 배려한 사업활동이 경제사회의 폭넓은 주체로부터 평가되도록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과 기타 사업활동에 동반하여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에 관계된 정보개시를 추진하는 것. (제

45조 관계)

⑬ 제품 등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확립 등

정부는 제품의 제조부터 수송, 이용 및 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내외에서의 행정 및 역무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과 다른 자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대한 기여정도의 산정 및 표시방법 등을 확립하고 그 방법의 국제적인 표준에 대한 반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제품, 역무 및 에너지의 구입 및 이용과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을 배려한 계약을 추진하는 것. (제46조 관계)

⑭ 카본오프셋의 추진

정부는 카본오프셋에 관계되는 삭감 또는 흡수된 온실효과가스량의 산정, 인증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에 의해 카본오프셋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 (제47조 관계)

⑮ 사업자에 의한 대처의 촉진

정부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의 창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자, 농림수산업자 등이 행하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와 기타 대처에 대한 투융자 등을 촉진하는 것. (제48조 관계)

⑯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정부는 태양광발전장치, 축전지, 전력계통, 연료전지, 철강의 제조, 자동차, 정보통신 등에 관계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 혁신적인 기술의 계획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것. (제49조 관계)

⑰ 환경교육의 추진

정부는 가정, 학교, 직장, 지역 및 기타 모든 장소에서 환경교육의 충실이 도모되도록 교재의 개발, 인재의 육성, 환경을 배려한 학교시설 및 학습환경의 정비 등을 촉진하는 것. (제50조 관계)

⑱ 국민운동의 추진

정부는 지구온난화상황,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 동반하는 온실효과 가스 배출상황, 그 배출량 삭감 등에 유효한 대처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사업자, 국민 등에 의한 협동대처 촉진 등에 의해 사업자, 국민 등의 사이에 저탄소사회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국민 한사람한사람의 자주적인 행동에 의한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국민운동의 전개를 촉진하는 것. (제51조 관계)

⑲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책의 추진

정부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관한 관측 및 감시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감염증 등의 여방, 농작물의 품종개량, 홍수, 고조, 갈수, 간벌, 토사재해 등에 의한 피해 방지 등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 (제52조 관계)

⑳ 저탄소사회만들기를 위한 국제공헌

정부는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국제적 구조 만들기를 주도함과 동시에 이러한 구조에 책임을 공유하여 참가하는 개발도상지역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에 기여하도록 기술협력 및 자금공여, 사회자본정비, 인재육성 등에 관계된 협력을 추진하는 것. (제53조 관계)

제 6 장 저탄소사회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정비

①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을 장기적,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별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

② ①의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추진본부의 명칭에 대해서는 동항의 법률에 있어 이와 다른 것으로 해도 무방한 것. (제54조 관계)

제7장 기 타

①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월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 (부칙 제1조 관계)

②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충실정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의한 피해상황, 경제사회의 동향,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대해 검토를 더해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 (부칙 제2조 관계)

③ 기타 소요 규정의 정비를 행하는 것.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전 문

목재의 적절한 공급 및 이용확보를 통한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삼림의 적절한 정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이 책정하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등 및 목재제조고도화계획의 인정에 대하여 정하고 당해 계획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임업·목재산업개선자금조성법 및 삼림법의 특례조치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목 적)

제 1 조 이 법률은 삼림이 가지는 국토의 보전, 수원의 함양 및 기타 다방면에 걸친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에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수산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이 책정하는 기본방침 등에 대하여 정함과 동시에, 공공건축물 등의 정비용으로 제공하기 목재의 적절한 공급확보에 관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목재의 적절한 공급 및 이용의 확보를 통한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이로써 삼림의 적절한 정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 의)

제 2 조 ① 이 법률에 있어 「공공건축물 등」이라 함은 다음에 언급하는 건축물(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정비하는 공공용도 또는 공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정비하는 학교, 노인홈 및 기타 공공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이 법률에 있어 「목재의 이용」이라 함은 건축기준법 제2조 제5호 에 규정하는 주요구조부 및 기타 건축물의 부분건축재료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기타 목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이 법률에 있어 「목재제조 고도화」라 함은 목재의 제조를 업으로 행하는 자가 공공건축물 등의 정비비용으로 제공하는 목재 제조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정비, 고도의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인재의 확보 및 기타 조치를 행함으로써 공공건축물 등의 정비비용으로 제공하는 목재의 공급능력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책무)

- 제 3 조 ① 국가는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인재육성, 기술개발 및 보급과 기타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함과 동시에,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연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국가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및 기타 공공건축물의 성질에 비추어 목재에 대한 수요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스스로 솔선하여 그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에서의 목재이용에 노력해야한다.
- ③ 국가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에 있어서는, 공공건축물 등의 정비비용으로 제공하는 목재가 적절하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비추어 목재제조 고도화 촉진 및 기타 공공건축물 등의 정비비용으로 제공하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국가는 교육활동, 광고활동 등을 통하여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그 실시
에 관한 국민의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 4 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구역의 경제적·사회적 제조건에 따라 국
가의 시책에 준하여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그 정비하는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이용에 노력해야 한다.

(관계자의 책무)

제 5 조 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언급하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에서의 목재이용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임업종사자, 목재제조를 업으로 행하는 자 및 기타 관계자는
공공건축물 등의 정비비용으로 제공하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에 노
력해야 한다.

(기본방침)

제 6 조 농림수산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② 기본방침에서는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의 의의 및 기본적 방향
2.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국가가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에서의 목재이용의 목표
4. 공공건축물 등의 정비비용으로 제공하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확보
에 관한 기본적 사항

5. 기타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기본방침은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 상황, 건축물에서의 목재이용에 관한 기술수준 및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경제사정의 변동 및 기타 정세의 추이에 의해 필요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방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⑤ 농림수산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각 성 각 청의 장(재정법(1947년 법률 제34호) 제2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각 성 각 청의 장을 말한다. 다음항에 있어 동일)에게 협의해야 한다.

⑥ 농림수산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각 성 각 청의 장 및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도도부현 방침)

제 7 조 ①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당해 도도부현 구역내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방침(이하 「도도부현 방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방침에서는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도도부현 구역내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당해 도도부현이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에서의 목재이용목표
3. 당해 도도부현 구역내에서의 공공건축물 등의 정비비용으로 제공하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
4. 기타 당해 도도부현 구역내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

에 관해 필요한 사항

- ③ 도도부현 지사는 도도부현 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관계 시정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정촌 방침)

제 8 조 ① 시정촌은 도도부현 방침에 따라 당해 시정촌 구역내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방침(이하 이 조에 있어 「시정촌 방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② 시정촌 방침에서는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시정촌 구역내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당해 시정촌이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에서의 목재이용목표
 3. 기타 당해 시정촌 구역내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
- ③ 시정촌 방침에서는 전항 각호에 언급하는 사항 외에 당해 시정촌 구역내에서의 공공건축물 등의 정비용으로 제공하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④ 시정촌은 시정촌 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재제조고도화계획의 인정)

제 9 조 ① 목재의 제조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목재제조고도화에 관한 계획(이하 「목재제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 그 목재제조고도화계획이 적당하다는 요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목재제조고도화계획에는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재제조고도화의 목표

2. 목재제조고도화의 내용 및 실시기간
3. 공공건축물 등의 정비비용으로 제공하는 목재의 제조비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삼림법(1951년 법률 제24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워진 지역삼림계획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항에 규정하는 민유림(동법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안시설지구의 구역내 및 해안법(1956년 법률 제101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안보전구역내의 삼림(삼림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삼림을 말한다. 제4항에 있어 동일)을 제외한다)에서 전호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개발행위(삼림법 제10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이하 동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5. 목재제조 고도화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방법
 - ③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인정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그 목재제조고도화계획이 기본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고 또한 목재제조고도화를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그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 ④ 농림수산대신은 제2항 제4호에 언급하는 사항이 기재된 목재제조고도화계획에 대하여 제1항의 인정을 하고자 할 때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언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항 제3호의 시설정비비용으로 제공하는 삼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도도부현 지사는 당해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개발행위가 삼림법 제10조의2 제2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⑤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동의를 하고자 할 때는 도도부현 삼림심의회 및 관계 시정촌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목재제조고도화계획의 변경 등)

제10조 ①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목재제조업자」라 한다)는 당해 인정에 관계되는 목재제조고도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단,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인정목재제조업자는 전항 단서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농림수산대신은 인정목재제조업자가 전조 제1항의 인정에 관계되는 목재제조고도화계획(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었을 때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인정목재제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목재제조고도화를 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임업·목재산업개선자금조성법의 특례)

제11조 임업·목재산업개선자금조성법(1976년 법률 제42호) 제2조 제1항의 임업·목재산업개선자금으로서 인정목재제조업자가 인정목재제조고도화계획에 따라 목재제조고도화를 행하는데 필요한 것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은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12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삼립법의 특례)

제12조 인정목재제조업자가 인정목재제조고도화계획(제9조 제2항 제4호에 언급하는 사항 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에 따라 동항 제3호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삼립법 제10조의2 제1항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국유시설의 사용)

제13조 국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의 정비비용으로 제공하는 목재의 생산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는 자에게 국유의 시험연구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용대가를 시가보다도 낮게 정할 수 있다.

(보고의 징수)

제14조 농림수산대신은 인정목재제조업자에 대해 인정목재제조고도화계획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벌 칙)

제15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및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전항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동항의 형을 부과한다.

부 칙

(시행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않는 범위내에

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검 토)

제 2 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대하여 검토를 추가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